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06.10.18 ~ 11.1(15일간)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



企劃行政委員會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10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12일

3.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및 근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대체휴무가 있는 당직은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수당을 30,000원으로 하고,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50,000원으로 인상하여 차등지급

5. 검토의견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 즉, 숙직근무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대체휴무가 있는 당직근무자와 차등지급하므로써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적 불이익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